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8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된 안건

- | | |
|-----------------------------------|---|
|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1 |
|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1 |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주 이후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배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증인 김영호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 동명이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훈 위원 먼저 상정하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상정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니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특정 증인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도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증인에 대한 국회의 소환 권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을 넘어서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생각으로 특정 증인을 동행명령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법을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저희지요—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증인이 제출한 여러 소견서와 상황이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 가라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국정감사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특정 증인의 병명이 전 언론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개인정보법 제23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국회가 아니었으면 소송 결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인에 대한 병명을 언급하는 행위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어떤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민감한 개인정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나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건강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은 같은 의학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과거의 경력,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고 고의성을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다. 논리를 따져 보면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동행명령 이것은 백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의학 소견서를 낸 사람, 의사 소견서를 낸 사람의 의견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의사의 소견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국회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간사님은 재선 의원님이고 여당 위원님들은 다 초선 의원님이신데 그렇게 딱 규정 지으면 만약에……

○조정훈 위원 규정이 아니라 국회법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청한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 내면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는 그 의사 소견서를 낸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셔서는 안 돼요.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동의하십니까?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22대 때, 거의 당론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증인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전문의가 증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했는데 다시 데려와라?

○위원장 김영호 모든 정황……

○조정훈 위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증인으로 데려올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명백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지만 역대 국회 증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위중한 문제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 판단은, 휠체어를 타면 아프고 특정 병명, 아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장 김영호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정말 오랜 병력을 갖고……

○조정훈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 법 해석을 잘못……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정말 이 팩트대로 말씀……

○조정훈 위원 제 발언을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 팩트대로 하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국감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면 더 이상 국감 출석을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조정훈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당론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 김영호 큰일 날 말씀이세요.

○조정훈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젠가 이것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 의사 소견서에 의해서 특정 증인이 증인석에 설 수 없는 건강 상태라면 저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조정훈 위원 아니,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위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의사 소견서를 정당한 이유로’ 계속 얘기하시는 데 그런 점을 악용했던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하시든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의결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 소견서의 내용이 합당하다면……

○위원장 김영호 의사들이 합당한 의견서를 내겠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분명한 위법입니다, 지금 의결은.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진선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해외에 있는 분에게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주신 말씀은 행정실에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문정복 위원**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나중에 고발하면 되지요.

그러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설민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국민의힘 위원님 전원은 반대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찬성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야당 위원님들은 전원 다……

재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은 없습니다.

설민신 증인의 동행명령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분이 외국 사람도 아니고 거주지가 한국분이고 단지 잠깐 외국을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집행은 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인데 그래서 어제도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지만 그분을 못 만나 가지고 집행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발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내에 체류하면 말씀이 타당하실 수 있는데 이미 국외에 나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가……

○**진선미 위원** 그래서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행명령장은 발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거는 제가 오찬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설민신 증인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지만 정당성이 없는 공무 국외여행을 이유로 이를 모두 불출석한 전력이 있습니다. 설민신 증인은 15일 한경대학교 국감 또 24일 종합국감에도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오늘 동행명령에 따르고 남은 기일에도 출석하기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증인들이 오늘 동행명령마저 거부하거나 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위원장으로서 공언합니다.

동행명령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고 다시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 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6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전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10. 22.(화)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김영호	풍전에프앤비 대표	
김종량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형숙	한양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10. 24.(목) 교육부 등
한재숙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참고인(2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정수경	초등교사	10. 22.(화)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박진구	천안늘사랑교회 담임목사	10. 24.(목) 교육부 등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